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평가번호: 14)**

Special

| 개인·법인 | 업종(코드) | 조사유형 | 외형구간 | 조사청 |
|-------|------------|------|--------|-----|
| 법인 | 제조(242301) | 비정기 | 351억원대 | 지방청 |

Text I 조사성과(결과)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0X년 5월 설립하여 경피약품전달시스템 기술 기반으로 패치형

Text 의약품 및 치매치료제(도네패질) 패치 개량 신약 개발을 주업으로 하여 '1X.7월

Text 코스닥 특례상장

Text - '2X년 10월 도네패질 패치 제품의 중남미 00개국에서의 판매 라이센스 및

Text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을 ㈜☆☆☆☆과 체결해 주가 상승

Text 나. 적출성과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 연번 | 조사항목 | 코드 |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
|-----|--------------------------|-------|--|
| 1) | 가공매입 매입세액 (리베이트지급관련) | 20402 |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가공경비 계상(가 공세금계산서 수취) |
| 2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자산 저가양도) | 11302 | 사주에게 전환사채 콜옵션 저가 양도 부당 행위 |
| 3 | | | |
| 4 | | | |
| (5) | | | |

Text O (최초 적출사례) 제약회사의 의약품 처방실적에 대한 대가(리베이트) 지급
Text 적출하여 과세함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1

❖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항목코드: 20402)
리베이트 재원 마련을 위해 가공경비(가공세금계산서) 계상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조사법인은 의약품 영업과 관련하여 직접 병원 영업을 하지 않고 하위

Text CSO와 마케팅 위탁계약을 한 후 하위 CSO가 병의원 영업을 하여 제출한

Text 처방 근거자료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됨

Text - 조사법인의 자료만으로 **의료인**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를 찾는게 불가능하고

Text 병의원 직접 영업을 하는 하위CSO를 조사해야 리베이트 유무를 확인할 수

Text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하위CSO**를 **추가선정**하여 조사함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1차 CSO 선정) 조사법인과 의약품 영업으로 마케팅 위탁계약을 한 CSO

Text 업체는 10여 곳으로 확인되어 CSO와의 거래내역을 상세히 분석한 후 세금

Text <mark>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 진행함</mark>

Text - 조사결과 병의원의 의사들에게 지급한 사실 확인되지 않고 동 업체도 제약

Text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다시 **하위 CSO**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Text 사실을 확인함

Table

※ CSO 종류

○ 원래 제약회사에서 병원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 퇴사후 만든 본래의 CSO와 플랫폼 사업(판매대행 재위탁)을 하는 변형된 CSO 2종류로 구분되며, 동업체는 후자에 속하며 제약회사와 판매대행용역 계약을 하고, 직접 병원 영업은 하지 않고 하위 CSO와 마케팅 위탁계약을 한 후 하위 CSO가 병의원 영업을 하여 제출한 처방 근거자료로 제약회사에 전달하여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

- Text O (2차 CSO 선정) 1차 CSO 조사로도 리베이트 적출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Text 동업체의 28개의 매입처를 일일이 정밀 검토하여 최하위 CSO로 추정되는

 Text 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 조사진행
 - Text 최하위 CSO 선정시 제약회사 근무이력이 있고, 하위 CSO 위탁 없이 병의원에 Text 직접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세 및 부가세 탈루혐의가 있는 업체를 Text 선정하였음(리베이트 제공으로 적정경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Text 나. 핵심 증거자료 확보

- Text (계좌이체내역 확인) 조사시 계좌 내역을 검토한 바 본인 및 모친의 사업자

 Text 계좌로 수수료 수령후 다시 본인의 타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병의원

 Text 원장에게 수시로 자금이 계좌이체 되고 있음을 확인함
- Text (리베이트 확정) 기 조사한 1차 CSO의 '조사법인 의약품 판매 정산내역'을

 Text 확보하여 확인한 바, 동 업체가 상위 CSO(1차 CSO)에 의약품 판매 정산내역을

 Text 송부하면 수수료를 수취하고 받은 수수료의 일부(70%정도*)를 10여분 이내

 Text 로 병의원 원장에게 이체하고 있어 처방실적에 대한 대가로 확정함
 - Text * 복제 의약품의 경우보험약가의 40%~50%가 CSO 수수료로 지급되므로 결국 Text 보험약가의 30% 정도가 리베이트로 지급됨
- Text (가공경비 적출) 리베이트 제공분에 대한 경비 처리가 어려워서 허위경비를

 Text 계상하기 위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매입세액

 Text 불공제함

Text 다. 처분 유지

- Text O (기타소득 인정) 의약품 처방실적과 이에 대한 수수료의 일부를 계좌이체한 Text 내역을 대사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병의원 원장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Text 발송하였고, 간접적으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함
 - Text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원장은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인정 Text 하고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하였음을 확인함

Special

적출②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항목코드: 11302) 사주에 전환사채 콜옵션 저가 양도분 부당행위계산 부인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전환사채 콜옵션**은 성격상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에 해당함

Text - '22.5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콜옵션을**Text 전환사채와는 구분·분리된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으로 정의하며「전환
Text 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함

Text ○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사주의 고발조치 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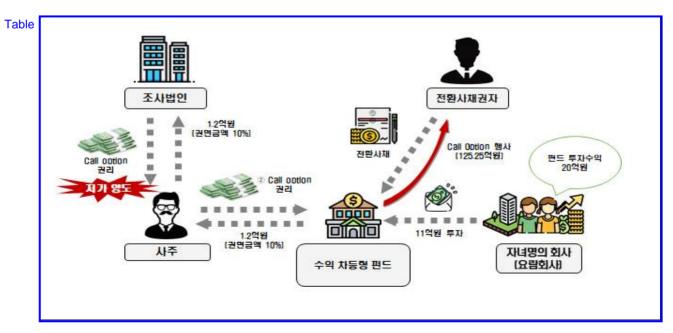
Text - 조사법인 사주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공모**하여 **CB 콜옵션**을 이용 이익을
Text 얻기 위해 **수익차등형 편드***를 만들고 **사주 자녀법인이 2종 수익자**로서
Text 11억원 투자함

* 1종 수익자(120억원), 2종 수익자(15억원)로 구성된 펀드로 2종 수익자가 투자수익의 Text 80% 이상 분배받는 구조의 펀드

Text - 사주는 조사법인으로부터 CB 콜옵션을 1.2억원(CB 액면가의 1%)에 양수한 후

Text 즉시 펀드에 양도하였으며, 해당 펀드는 CB 콜옵션 행사 및 전환권 행사하여

Text 이익을 얻은 부분에 부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함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내용 검토

Table

<mark>참고</mark> '22.5월 금융위원회 언론보도자료 中 일부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특정 금융상품(전환사채)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콜옵션)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전환사채)과는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전환사채(기존 사채권자)와는 다른 거래상대방이존재하는 파생상품(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정의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사실관계 확인

Text - (CB 콜옵션 부여) 조사법인은 '19년 제2회차 전환사채 350억원, 3회차 전환

Text 사채 50억원을 발행하면서 권면총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부여

Text 하면서 발행법인이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하도록 함

 Text
 - (콜옵션 지정) 조사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콜옵션 행사자를 사주(대표 Text

 Text
 이사)에게 지정하고 콜옵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사주로부터 콜옵션 Text

 행사대상 전환사채 120억원의 1%를 대가로 수취함

Text - (콜옵션 양도) 사주는 부여받은 콜옵션을 "○○전문투자신탁 펀드"에 양도 Text 하고 펀드로 하여금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여 전환권 행사 및 주식을 매도 Text 하여 2종 수익자로 투자한 자녀법인이 투자수익을 얻도록 햄

Text O (콜옵션 시가 산정) 조사법인이 발행한 제2·3차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평가는

Text 사주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아이큐어㈜ 이사회 결의일(부당행위계산부인

Text 규정 적용시점)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 평가금액을 거래

Text 시가로 결정함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Text ○ (납세자 주장) 조사법인이 얻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 것이 없으므로

Text 이익분여자로 볼 수 없으며,

- Text 사주는 쟁점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었고 실제로 이익을 얻지도 Text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분여된 거래당사자로 보아 소득처분(상여)하는 Text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 Text 거래 목적은 투자신탁의 투자 유치인 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Text 보기 어려움
- Text O (조사팀 과세논리) 조사법인이 사주를 CB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시 적정 Text 대가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대가를 수취하였으므로 부당행위 Text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 Text 사주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공모하여 쟁점 거래를 계획하여 실행하였으며,

 Text 쟁점 콜옵션을 저가로 취득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Text 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적용되는바, 법인세법의 소득처분은 정당함
 - Text 쟁점 거래는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주가 이익을 얻기 위해 공모한 Text 정황이 확인되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임이 명백함

Text 다. 과세요건 검토

- Text O (자산의 저가양도) 조사법인이 발행한 CB 콜옵션 권리는 독립적으로 양도 Text 가능한 '별도의 파생상품 자산'에 해당하므로 사주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Text 대가수취 행위는 '자산의 저가양도' 손익거래에 해당함
- Text O (콜옵션 적정가치 불분명) 조사법인이 사주를 CB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 Text 하여 받은 대가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가 없으며,
 - Text 콜옵션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임의 금액으로 양도한 사실은 경제적

 Text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Text 것이 타당함
- Text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점) 조사법인이 사주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한 Text 이사회 결의일('20.12.17.)을 부당행위 발생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Te<mark>xt 참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48, 2016.01.18</mark>

Table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이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Text -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Text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제1항 제3호 규정의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 Text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 해당함

Text 라. 도전적 과세 및 처분 유지

Text ○ 조사항목에 대한 세법 해석자료, 심판례 등 합리적 과세근거를 제시하고,

Text <mark>사전심의를 통해 정당한 과세논리를 구축하였으며, 조사법인에 충분한 의견

Text 제출 기회를 제공하여 **과세품질 제고**에 힘씀</mark>